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시장의 이해(1)

〈계약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이 철 종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주) 대표이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지원단 단장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국가 및 지방) 계약제도의 이해

공공계약 의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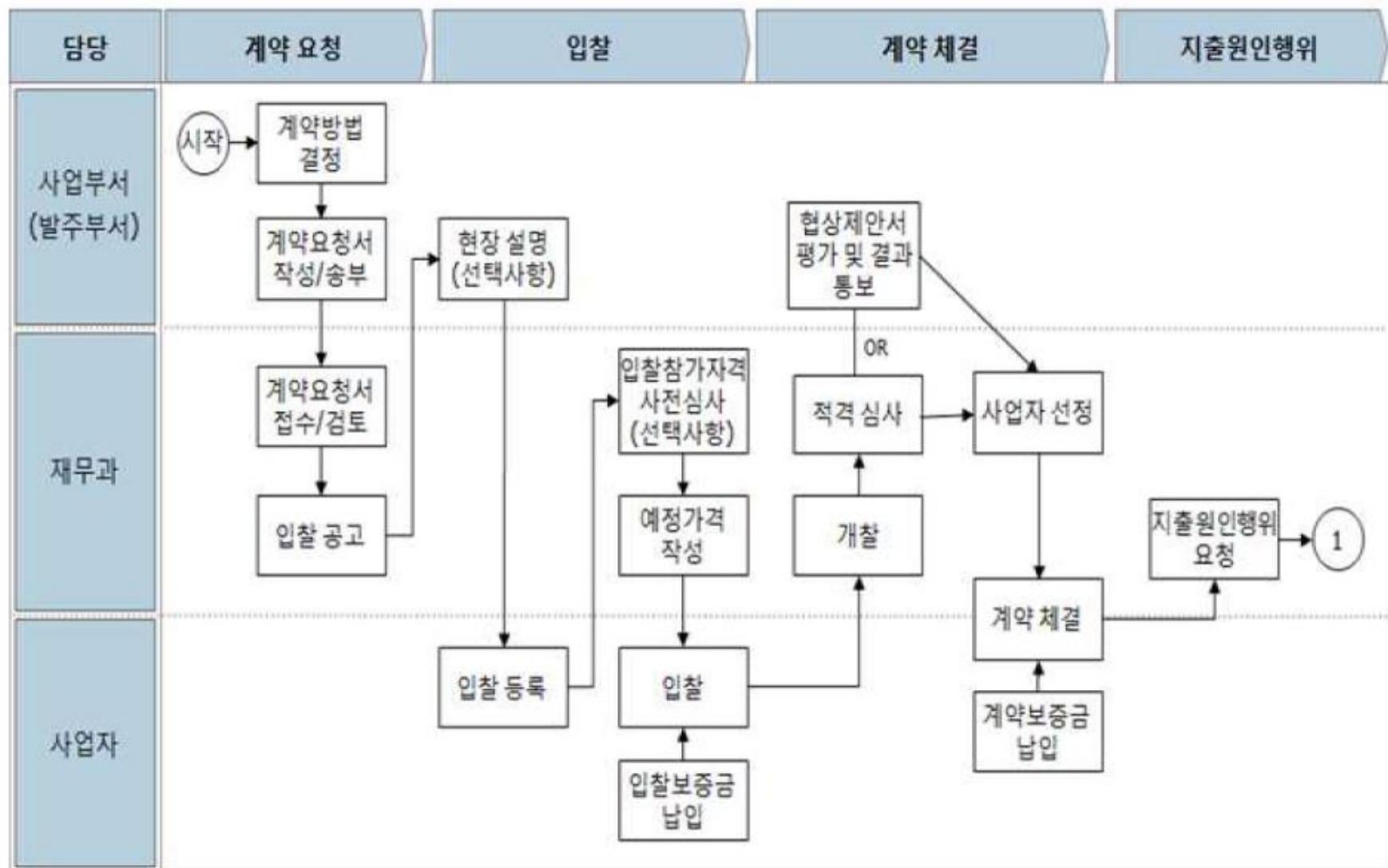
☞ 계약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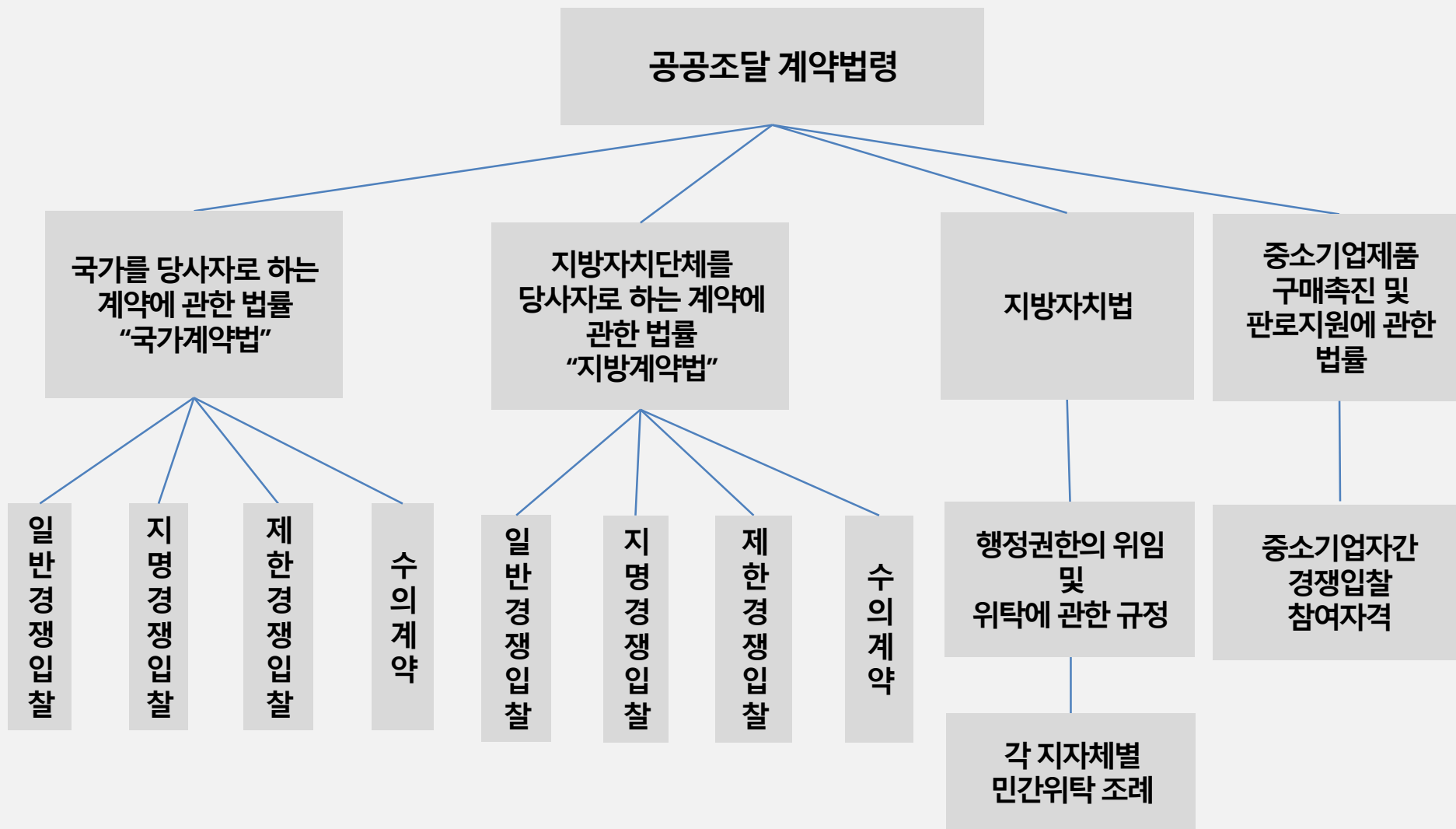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 공공계약 적용대상 기관

구 분		대상기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직접적용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국 가기관이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법인
	준용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직접적용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2조) · 시·도 및 시·군·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 법인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 시·도 및 시·군 구의 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준용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방공사 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공공구매 계약 절차 진행도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목적물에 따른 분류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공사계약	단년도, 장기계속, 계속비 계약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용역계약	확정, 개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체결
물품제조, 구매계약	총액/단가/제3자단가/다수공급자 계약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단독/공동 계약 등	수의계약	희망수량입찰, 2단계 입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등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제한경쟁입찰

☑ 개념 : 제한경쟁입찰이란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 제한의 기본원칙

- 계약목적물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 결정
- (원칙) 중복제한 금지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 가능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구 분	목적물	제한요건
해 당 계 약 목 적 물 과 동일한종류의 실 적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1>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기 술 보 유 상 황	공사	○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시 공 능 력 평 가 액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설 비 제 한 유 자 격 자 명 부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공사	○ 시·도지사나 공사 성질별·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된 사업자로 제한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중소기업부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소 기 업 소 상 공 인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제한입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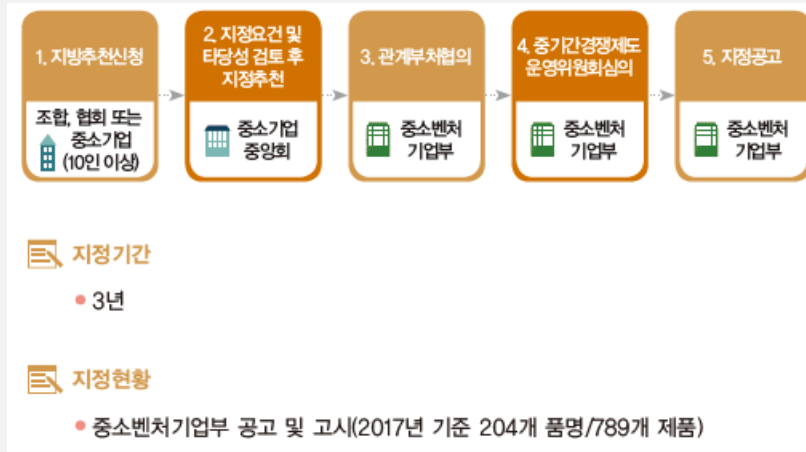
☞ 개념 :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지정한 용역·물품 및 일정금액 미만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 적용범위

구 분	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금액 (추정가격)	자격		
〈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금 액 에 상관없이	중 기 업 소 기 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경쟁입찰	금액에 상관없이 ○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 ○
				1천만원 미만 : ×
〈금액기준〉 非경쟁제품 * 물품, 용역	1억원 미만	소 기 업 소상공인	모든 구간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 산 확인 의무없음
	1억원 이상 2.1억원 미만	중 기 업 소 기 업 소상공인		
	2.1억원 이상	제한없음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지명경쟁입찰

☑ 개념 : 지명입찰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2조~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

☑ 지명방법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함

☑ 대상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 10인이내
-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그 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용역 추정가격 2억원,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단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등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수의계약

- ☑ 개념 :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1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관련규정

-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적용범위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1인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만)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8.07.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적격심사낙찰제

- ☞ 개념 : 적격심사 낙찰제란,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비가격요소인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우선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1순위 적격대상자의 이행능력(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임.



☞ 관련규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지방계약법 제 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용범위

구 분	적용범위
공 사	-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
용 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
물 품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물품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협상에의한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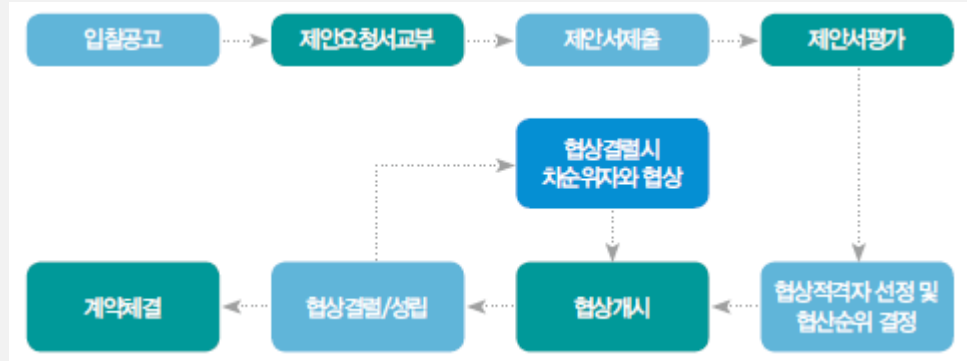
- ☑ 개념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가산점)
서울시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희망기업과 신규인력 채용, 가족친화경영 등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평가기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 초과 불가
	정성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10



공공시장 계약제도

공공구매 계약의 유형별 분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 개념 :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MAS 2단계경쟁제도 :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중소기업 물품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	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조달청 | 나라장터 | 목록정보 | 벤처나라

로그인 | 이용자등록



전체(품명,규격,업체명 등) ▾



상세검색

도움말

e-고객센터 | 원격지원 | 원격지원(콜센터) | MAS불공정거래신고

Home > 전용몰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전용몰 카테고리 ▾

중기간경쟁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사무, 교육, 영상

전자, 정보, 통신

섬유, 고무, 위생

화학, 소방, 안전

차량, 운반

전기, 시험, 계측

기계, 설비

시멘트, 아스팔트

토목, 건축

도로시설, 철도, 기타

식물류

전용몰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보훈단체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전통문화상품

사회적협동조합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인증을 가지고 있는 물품만 재정렬됩니다.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본품

☐ 별도옵션

품명, 규격, 모델, 회사 ▾

검색

품명바로가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수의계약 확대

기존제도

사회적경제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하 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정안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이상)을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18년 07월 24일 시행.

기대효과

-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취약계층 고용비율 증명서 발급

-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 100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나라장터 약자지원 배점 (MAS Ⅲ유형)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결과	5
	정책지원	정책지원대상기업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결과	-0.25
		최저임금위반	-0.5
		임금체불	-0.5
		고용개선조치미이행	-0.5
		고용우수기업	+0.5
		기술인증	+1

※ 출처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7-27호)

구 분	평가기준	평점
정책지원 대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G-PASS기업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산점 확대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외에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신인도 가점(2점) 신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용대상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구매 입찰 및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 시행일 : 2018.04.01

적용대상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		비고
			변경전	변경후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정책지원	인증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2.0	2.0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 인가)	2.0	2.0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2.0	신설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	2.0	신설

- 물품구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이상인 물품
-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

Check

•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은 가산점 적용 제외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산점 확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산점 확대(0.5점→1점) 및 자활기업, 마을기업 가산점 항목 신설

■ 지방계약법,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 시행일 : 2018.01.01

대상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		비고
			변경전	변경후	
• 모든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적격심사	5)기타	인증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5	1.0	확대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 인가)	0.5	1.0	확대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1.0	신설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	1.0	신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Check

•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은 가산점 적용 제외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산점 확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통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확대 필요함.

대상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한도	평점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 추정가격 5억 ~ 10억원 미만인 용역 - 추정가격 2억 ~ 5억원 미만인 용역 -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 등』	약자 및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1.5	1.5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8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1.5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5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1.5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8.08.18)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산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산점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배점한도 1.5)

대상	평가항목	배점	
		배점한도	평점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시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5	1.5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0.8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5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5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1.5
• 중소기업과 구성시	기업유형 & 출자비율에 따라	0.5	0.15~0.5
• 지역업체와 구성시	서울소재기업이면서 기업유형 & 출자비율에 따라	2.0	1.0~2.0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8.08.18)



공공시장 계약제도 개선

협상에의한계약 가산점(서울시) 활용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사회적약자기업 등 우대

서울시는 2014.3.10.부터 협상계약의 정량평가 항목에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	2.0
	1.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8	1.8
	2. 예비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1.8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 출처: 서울시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2018)

확장

- 정량평가 가산점 만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정성평가에 사회적 공헌도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